

◎포항국토관리사무소공고 제2022-358호

「도로법」 제66조(점용료의 징수 등) 및 동법 제69조(점용료의 강제징수), 『국세징수법』 제24조(강제징수)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피허가자에게 도로점용료 고지서와 납부최고서 발송 및 이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실시하였으나, 이사불명의 사유로 압류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23년 01월 03일

포항국토관리사무소장

도로점용료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서 공시송달

1. 공고사유 : 체납자 재산 압류 후 폐문부재의 사유로 압류통지서 미수령

2. 공고기간 : 2023.1.3. ~ 2023.1.17.(15일간)

3. 공고내용

가. 『도로법』 제69조(강제징수) 및 『국세징수법』 제24조(강제징수) 규정에 의거 압류 절차 이후 압류통지서 공고

나. 송달내용에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의견 제출

- 제출기한: 공고기간 내

- 제출내용: 의견진술서, 증빙자료

- 제출방법: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방문 및 팩스(054-260-2529), 등기 우편 이용

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(054-260-2592)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.

공시송달 대상자 명부

순번	허가번호	이름	실명번호	주소	압류물건	사유	비고
1	포항97-66	차무○	781220 -1*****	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	19개 시중 은행계좌	이사불명	